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61호)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II. 검토의견

-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여, 2019년 11월 25일에 신청기간이 마감되었음. 개정안은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미 만료된 신청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법	개 정 안
제10조(보상금 등의 신청) ① (생략)	제10조(보상금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 1년 -----.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이내에” 앞에 기간만 수정하는 경우, 해당 개정이 이미 만료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이 법 시행 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법률의 수범자이자 신청의 당사자인 특수임무수행자가 고령¹⁾이고 법률 해석에 있어 비전문가임을 감안할 때,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는지를 법률에 쉽고 직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신청기간 연장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제정법률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000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신청기간을 제한하였다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0XX년 X월 XX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신청기간의 만료일을 법률에 명시해 주는 경우가 있음(참고자료).

○ 따라서, 연장된 신청기간의 시작일²⁾과 만료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제시함³⁾.

1)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함.

2) 신청기간의 만료일을 법률에 고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당초 의도한 신청기간(1년)의 확보를 위해서 법률의 시행일도 신청기간을 역산한 특정 시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국방부는 시행일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까지 통상적인 소요 시간 및 제도의 준비·홍보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보상금 등의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u>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u>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 등의 신청) ② -- ----- ----- <u>2026년 3월 31일까지</u> -----.
부칙	부칙
이 법은 <u>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 <u>2025년 4월 1일부터</u> ----.

(전문위원 김 성 완)

참고	신청기간 연장과 관련된 유사 입법·의안례
----	------------------------

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의원 등 11인)」(의안번호 제 176072호, 의결 및 시행)

(개정 당시) 현 행 법	개 정 안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u>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u>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08년 6월 30일까지</u> <u>하여야 한다.</u>

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19599호, 의결 및 시행)

(개정 당시) 현 행 법	개 정 안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u>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u> 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21년 5월 31일</u> <u>까지</u> -----.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
원 등 11인)」(의안번호 제2125214호, 임기만료폐기)

(개정 당시) 현 행 법	개 정 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u>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u> 하여야 한다.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24년 12월 31일까지</u> ----- -----.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의안번호 제2203569호, 소관 상임위 심사 중)

현 행 법	개 정 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u>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u> 하여야 한다.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